

# 논산시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13호 | 의결연월일 | 2022. 02. 15.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, 제안자 : 2022년 02월 07일, 논산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2년 02월 07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2년 02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맑은물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(건강진단)를 반영하여 논산시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종사자에게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등의 감염병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, 현재 조례상 건강검진비 지원이 어려워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논산시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등의 감염 여부에 관한 건강검진비 지원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